

##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-86호(2023.08.11)에 의거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「도시계획도로(중로2-690호선 외 3개 노선) 개설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16조(협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(송달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도로(중로2-690호선 외 3개 노선) 개설사업
2. 사업시행자 : 회덕지역주택조합(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6, 2층(읍내동))
3. 공고사유 :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함
4. 공고기간 : 2023년 11월 06일 ~ 2023년 11월 24일(초일 및 공휴일 제외 14일간)
5. 공시송달 대상 : 「8. 공시송달 내역」 붙임 참조
6. 공시송달 내용 :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 요청
  - 가. 협의기간 : 2023년 11월 06일 ~ 2023년 11월 24일
  - 나. 협의장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6, 2층 회덕지역주택조합
  - 다. 협의방법 : 토지 등 소유자 별로 협의 장소에 방문하여 개별협의 진행
  - 라. 보상의 시기 및 방법, 절차
    - 협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 및 서류 제출 후 등기 이전 등 이상이 없을 시 소정의 절차 이후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(은행 계좌 입금) 예정
    - 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권, 지상권 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 계약 체결 가능
  - 마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    -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일반용 인감증명서 각 1부
    - 주민등록초본(주소전체이력표기) 1부
    - 등기부등본(토지) 1부
    - 본인 통장 사본 및 인감도장, 신분증 지참

7. 기타사항

- 가.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- 나. 기간 내 협의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(재결의 신청)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덕지역주택조합(☎ 042-631-0006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. 공시송달 내역(붙임 목록 참조)

2023년 11월 06일

회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종서

